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25-211호

문래진주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(경미한)변경인가 고시

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-358호(2015.11.19.)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19-89호(2019.06.13.),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19-200호(2019.12.26.),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21-46호(2021.03.18.)로 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(변경) 고시,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21-103호(2021.05.27.)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,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23-100호(2023.8.24.)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,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25-137호(2025.8.14.)호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 고시 된 영등포구 문래동5가 22번지 문래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4조 및 제78조 규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

2025년 12월 26일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

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: 문래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
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5가 22, 11,188.1㎡
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 - 성명: 문래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(조합장: 조중현)
 - 주소: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9길 10, 2층 220호
- 4-1. 관리처분계획인가일 : 2023년 8월 24일
- 4-2.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일 : 2025년 12월 18일
5.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
 - 가.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

건축면적(㎡)	건축연면적(㎡)			건폐율 (%)	용적률 (%)
	계	지 상	지 하		
2,766.53	56,032.63	31,972.90	24,059.73	26.38	299.28

나. 토지이용계획

구 분	명 칭	면 적(㎡)	비 율(%)	비 고
합 계		11,188.1	100	
정비기반시설	공 원	700	6.3	기부채납
택 지		10,488.1	93.7	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

다.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

공급대상	주택규모별 공급세대수										상가 면적(㎡)
	계	44	59A	59B	59C	74A	74B	84A	84B	114	
계	324	40	32	20	18	52	13	107	40	2	1,090.53
조 합 원	145	1	11	7	0	22	0	74	28	2	
보류시설	1	-	-	-	-	-	-	-	1	-	-
일반분양	138	14	16	8	13	30	13	33	11	0	-
임 대	40	25	5	5	5	-	-	-	-	-	-

라.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

구분	시설명	면 적(㎡)	위 치	비 고
신설	소공원	700	문래동5가 22	기부채납

마.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 등

- 기존 건축물 연면적 : 21,648.99㎡, 건축물 수 : 4동 (주 4, 부속 3개동)
- 2025.09.24. : 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 처리

6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주거사업과(☎ 02-2670-3501), 문래진주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사무실(☎ 02-2632-0099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25-212호

개발행위허가 제한 해제 고시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25-15호(2025. 1. 23.)로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된 신길동 619번지 일대 보라매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구역에 대하여 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’ 제63조 제3항에 따라 제한을 해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5년 12월 26일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

1. 해제근거 :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3항

2. 해제지역

위 치	면 적	비 고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619번지 일대	4,246.6㎡	영등포구 고시 제2025-15호 관련

3. 해제사유 : 본 구역의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사유가 소멸(보라매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주체의 사업추진 철회)되어 기존의 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’ 제63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해제하고자 함

4. 해제일 : 2025. 12. 26.

5. 결정도 : 붙임 참조

6. 기타사항 : 기타 문의사항은 영등포구 주거사업과(☎ 02-2670-3528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■ 붙임 : 개발행위허가 제한 해제 결정도

